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기술유출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휴대폰, LCD, LED, PDP, 반도체 등의 분야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또한 높다. 이에 해

외기업들이 우리의 핵심기술을 노리고 있어 해외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벤처기

업들이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기술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글_ 윤선희(한양대학교 교수)

최 근 해외의 고급두뇌들이 중국 상하이(上海)로 몰려들고 있다. 작년 9월 3일 모일간지에 따르면 '노련한 일본 고급기술자들이 중국 기업에 기술을 넘긴다. 일본의 장기 불황으로 고급기술자 퇴직과 실업이 늘자 중도 퇴직자들이 대거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 현지기업으로 몰려들고 있다. 상하이 소재 '중국인재정보회사' 책임자는 "2003년 4월말 현재 중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일본인 및 외국인 기술자 명단을 무려 1200여 명이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중 70% 이상은 일본 제조업체에서 1급 기술자나 현장관리자, 고급감독관으로 일했던 기술인재들이다"라고 밝혔다...**(후략)** 라고 보도했다.

물론 중국출신이 해외유학을 마치고 중국 상하이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고급두뇌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가는 것은 문제이다. 이런 현상은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자국 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제3국으로까지 가서 취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물론 국내에서 자국민이 모두 취업이 되고 적절한 보수를 받는다면 굳이 해외로 나가 취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는 기업에서 종신제라는 개념이 무너지면서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을 보면 우리 역시 일본과 다르지 않다.

IT 첨단핵심기술 유출

2003년 11월 국내 벤처기업이 S전자의 휴대폰 관련 핵심기술을 빼내 중국에 거액(30억원)의 돈을 받고 넘긴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기술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국제시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계속 일어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먼저 첨단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인식아래, 기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을 유치하면서 R&D연구센터도 함께 유치[도표1]하고 있다.

세계 초일류 기업들의 첨단 연구설비와 고급 기술인력들을 경쟁적으로 데려가면서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이 세계첨단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기술(IT), 휴대폰, LCD, LED, PDP, 반도체, 조선업계 등의 분야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시장점유율 또한 높아 해외기업들이 노리고 있는 분야이기때 더욱 국내 핵심기술 유출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표적의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 휴대폰과 LCD와 관련된 첨단핵심기술인 것이다. [도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은 1998년 이후 산업스파이사건으로 총 41건을 적발하였고, 약 31조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였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스파이 사건 가운데 75% 이상이 정보통신(18건) 및 전기전자(13건)인 것을 보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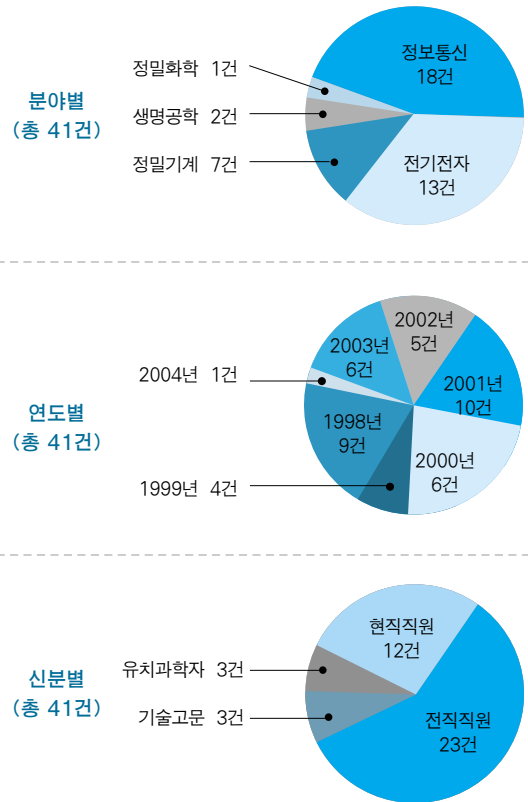
(도 표 1) 중국 에 R&D센터 를 세 운 글 로 벌 기 업

(출처 : 조선일보 2004년 3월 22일자)

기 업 센 터 명 칭	지 역
IBM중국연구센터	베이징, 상하이
모토로라중국연구원	베이징, 상하이
GE중국기술센터	상하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연구원	베이징
에릭슨연구개발센터	상하이
후지쯔연구개발센터	베이징
노키아중국연구센터	베이징, 항저우
마쓰시타연구개발유한공사	베이징
HP디지털신호처리기술센터	베이징
루슨테크놀로지 중국 벨실험실	베이징, 상하이
인텔중국연구센터	베이징, 상하이
도시바유한공사 연구개발센터	베이징
히타치중국 R&D센터	베이징
NEC-중국과학원 서안개발센터	시 안
GM 판아자동차기술센터	상하이
제록스 상하이소프트웨어개발센터	상하이
P & G 베이징연구센터	베이징
유니레버상하이 연구센터	상하이
상하이폴크스바겐연구개발센터	상하이

자료 : 중국 국제무역경제연구원 왕즈러(王志樂) 다국적기업연구소장 보고서,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보고서 등 취합

(도 표 2) 1998년 이후 국가정보원 적발 산업스파이사건



러한 분야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중국정부가 기업 차원을 넘어 해외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절차를 간단하게 하여준다거나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혜택을 주면서까지 유치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공장이전과 더불어 첨단기술까지 유출

이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R&D분야까지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공동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고 본다.

기업들은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정부규제가 많고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하는 것보다는 정부규제가 적고, 특혜를 주며, 임금이 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옮김으로써 공장이전과 더불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까지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과 이 현상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모르겠다.

우리의 첨단기술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기술의 보유자가 해당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국가 차원에서 큰 손실이 생키

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경쟁력 있는 기술이 다른 기업에 공개되어 그 기업이 새로운 경쟁상대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벤처관련 단체들의 기관적 대처 중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들이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기술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벤처기업들은 대부분이 기업자체에 산업보안 전담 부서가 없고, 수출 상대국에 대한 법규와 수출통제에 관한 법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략물자를 사회주의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수출통제제도’가 있으나 벤처기업들은 이러한 대외무역법 제21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등),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그리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법규를 모르고 있다.

만약 벤처기업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5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물품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부서도 없어 벤처기업 자체에서 산업보안과 기술유출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협회 등의 단체나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여야 할 것이다.